

「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0년 06월 08일 이주웅 의원이 발의하고, 2020년 0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등에서 결혼 이민자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자에 결혼 이민자 및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추가하고자 함에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조례안 제3조(지급대상자)에 “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” 및 “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자”를 추가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지급대상자를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조례안3조 지급대상자에 “「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” 와 “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제2호에 따

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”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
○ 본 조례안의 지급대상자 확대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3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3조 상 재한외국인, 다문화가족에 대해 특별한 처우 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며

○ 강원도 내 조례제정 5개시·군의 대상자 규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| 시군별 | 1. 「주민등록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| 2.결혼이민자 | 3.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 |
|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속 초 | ○ | 규정없음, 실제지급 | 규정없음, 실제지급 |
| 인 제 | ○ | ○ | 규정없음 |
| 철 원 | ○ | ○ | ○ |
| 태 백 | ○ | ○ | 규정없음 |
| 정 선 |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군수가 결정, 1·2·3호 실제지급 | | |

※상기 1·2·3호 대상자 모두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

○ 대상자 변경으로 추가되는 수혜자는 176명으로 확인되며(2020. 05. 27.기준) 개정에 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주민등록법」, 「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」, 「사회보장기본법」,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, 「출입국관리법」